



2014년 2월 27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제품안전정책과 전민영 과장(02-507-7434), 안드레 사무관(02-509-7238),
안전행정부 안전정책과 이광태 주무관

제품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감시가 강화된다!

- 국가기술표준원, 「제2차 제품안전 종합계획('14~'16)」 발표 -

- 앞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품목에 대한 리콜 등 시장감시는 강화되고, 사전인증 규제수준은 단계적으로 완화된 전망임
 - 국가기술표준원은 2.27(목) 이러한 정책방향을 담은 향후 3년간의 『제2차 제품안전 종합계획('14~'16)』을 수립하여 발표하였음
 - 동 계획은 안행부 등 안전관련 정부부처가 참석한 ‘안전정책조정 회의’에 상정하여 보고되었음
- 금번 종합계획의 핵심은 ‘기업의 자율적 책임 강화’라는 정책을 유지하는 동시에 온라인 유통시장 발전 등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위해제품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임
- 국표원은 종합계획에서 제품사고 최소화를 목표로 4대 전략, 14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함

< 4대 전략 및 14대 중점 추진과제 >

추진 전략	중점 추진과제
시장감시 강화	① 20대 안전취약품목 선정 및 중점 관리 ② 리콜처분 확대 및 이행률 제고 ③ 온라인시장 감시 강화 ④ 사고정보 기반의 안전관리체계 확립
제품안전관리 제도 선진화	① 사전인증 품목 단계적 완화 ②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③ 안전기준 제·개정 시스템 개선
제품안전 3개 법률 정비	① 제품 소관영역 명확화 ② 사업자의 안전사고 발생시 보고 의무화 ③ 온라인 유통제품의 관리근거 확보 ④ 리콜 행정주체 재정립
소통·협력 증진	① 정부-사업자-소비자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② 사업자-소비자의 안전의식 제고 ③ 국제협력 확대

○ 우선, 위해제품 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결합 등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고 안전기준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조치를 강화할 계획임

- 안전성 조사 결과 위반율이 높은 품목이나 리콜 상위 품목 등 20개 품목*을 선정하여 특히 집중관리하기로 하였음

* 완구, 아동용 섬유제품, 전기찜질기, 재생타이어 등 20개 품목

- 온라인 시장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통신 판매 중개자(옥션, 11번가 등)에 대해서도 인증 받지 않은 제품 판매 시 처벌근거를 신설하기로 하였음

○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사전인증 규제 수준을 점진적으로 완화*하고, 신제품 출시 시 기업 스스로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이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제품군별 공통안전기준* 제도를 도입하기로 함

* 사전인증, 자율안전확인, 공급자적합성확인(안전품질표시) 대상 품목비율을 현행 2:4:4에서 2016년까지 1:3:6으로 완화

** (예) 중금속 함유량, 주의사항 표시 등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제품이 꼭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안전요구사항

○ 또한 환경부, 식약처 등 부처 협업을 활성화하여 안전관리품목의 중복 조정* 및 안전기준 조화** 등을 도모하기로 함

* 화학물질 관리가 필요하였으나 그간 국표원에서 관리하던 공산품 8개 품목(세정제, 방향제 등)을 '15년부터 환경부로 관리 이관

** 물티슈 안전기준을 식약처에서 운용하는 화장품 관리수준으로 강화

○ 국표원은 위와 같은 내용의 제도화를 위해 금년 중 제품안전기본법,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,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등 제품안전 관련 3개 법률을 정비할 계획임

□ 국가기술표준원 성시현 원장은 "2차 제품안전 종합계획을 시행하여 위해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사회전반에 자발적인 제품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"이라고 밝혔음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안드레 사무관 (☎ 02-509-723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1. 그간의 정책방향 및 제품사고 동향

□ 그간의 정책방향

- '00년대 이후 소비자 안전을 목적으로 現 사전 인증제도 중심으로 제도 설계
 - * '00년 전기용품 대상 안전인증제도 도입, '06년 공산품 대상 현행 안전관리제도 구축
- '11년 제품안전기본법을 시행하면서 리콜조치 등 시장감시 중심의 정책 도입
 - * 리콜실적(명령·권고) : ('11) 105건 ⇒ ('12) 157건 ⇒ ('13) 209건
 - 150명의 소비자단체 안전감시원을 활용하여 전국 판매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, 문구점을 집중 감시한 결과 어린이용품 관련 불법제품이 대폭 감소되는 성과를 거둠
 - * 문구점, KC미표시 제품 적발건수가 ('10년) 33,390건 ▶ ('12년) 8,798건으로 74% 감소

□ 최근 제품사고 동향

- 최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및 다양한 신제품 출시로 인해 제품으로 인한 위해 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



- *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)에 접수된 사고 신고건수 중 국가기술표준원 소관품목인 공산품, 전기용품을 선별한 자료임
- 중국·베트남 등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 확대 및 온라인 쇼핑몰 등 유통시장 다변화로 불법·불량제품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
- 국내외 리콜 동향에서 완구, 아동용 섬유제품 등 어린이제품이 상위품목을 차지하고 있어 안전취약계층 관련 사고증가가 우려됨

2. 2차 종합계획 주요과제

- 금번 수립된 종합계획에서는 ‘기업의 자율적 책임 강화’라는 정책을 유지하는 동시에 온라인 유통시장 발전 등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위해제품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함
- 시장감시 기능 강화, 제품안전관리 제도 선진화, 제품안전 3개 법률* 정비, 소통·협력 증진 등 4대 전략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14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음
- * 제품안전기본법(이하 기본법),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(이하 품공법), 전기용품안전관리법(이하 전안법)

1 시장감시 기능 강화

-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20대 안전취약품목을 선정하여 안전성조사, 시장모니터링을 통해 집중관리하고, 안전성조사 부적합률, 리콜실적 등을 토대로 관리대상 품목을 재평가하여 업데이트 관리할 예정임

중점관리 대상 품목

공 산 품	전기용품
완구, 아동용 섬유제품, 물놀이기구, 비비탄총, 재생타이어, 생활화학 가정용품,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, 스포츠용 구명복, 접착제, 물티슈(10개 품목)	전기찜질기, 전기온수매트, 직류전원장치, 멀티콘센트, 형광등용 안정기, 전기방석, 전기스토브, 형광등기구, LED등기구, 백열등기구(10개 품목)

- 기본법 시행 이후 지난 3년간 기업제도 차원에서 취했던 자발적 개선 조치를 축소하고 리콜 조치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, 리콜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불이행 기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, 언론 공표 등 후속조치를 강화할 것임
- 또한, 리콜된 제품의 신속한 유통차단 및 회수를 위해 제품이력 추적 시스템*의 구축을 검토할 계획임
- * 제품 생산·유통·판매 단계별로 정보를 수집하여 제품명, 기업명, 지역별 검색을 통해 제조사, 출고현황, 인증일시, 검사항목, 리콜이력 등을 확인 가능

-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행정구현을 위해 사고정보에 기반한 선진형 안전관리 체계*를 확립하고, 근래 불법·불량제품 유통망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온라인 시장에 대해서 안전성조사 확대 및 유통업계와의 전산 시스템 연계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

* 정보수집·관리 → 제품사고조사·원인분석 → 제품위험성평가 → 리콜조치 및 안전기준 개발 지원

2 제품안전관리 제도 선진화

- 현행 인증품목에 대해, 저위험 제품이 과도한 안전성 검증절차를 적용하고 있는지를 재평가하여 3개년에 걸쳐 인증품목을 재조정할 계획이며, 조정품목에 대해선 사전 공지할 예정임

	2014년	2015년	2016년
공산품	<p>자율안전확인 ▶ 안전품질</p> <p>온열시트, 롤러스포츠 보호장구, 스노보드, 스키용구</p>	<p>자율안전확인 ▶ 안전품질</p> <p>건전지, 스케이트보드, 헬스기구, 수유패드</p> <p>안전품질 ▶ 관리대상 제외</p> <p>습기제거제, 간이 빨래걸이, 우산 및 양산, 모터 달린 보드, 바퀴달린 운동화</p>	<p>안전인증 ▶ 안전품질</p> <p>물놀이기구</p> <p>자율안전확인 ▶ 안전품질</p> <p>등산용 로프, 스포츠용 구명복, 고령자용 보행보조차, 고령자용 보행차, 휴대용레이저용품, 승차용 안전모, 운동용 안전모, 온열팩</p> <p>자율안전확인 ▶ 관리대상 제외</p> <p>(자율안전확인) 빙삭기, 미끄럼 방지타일 (안전품질) 물탱크, 텐트, 안경테, 물안경, 스테인레스수세미</p>
전기용품	<p>안전인증 ▶ 자율안전확인</p> <p>냉방기 및 제습기, 전동공구, 무정전 전원장치, 복사기, 전기청소기, 전자개폐기, 전기 건조기, 전기소독기</p> <p>자율안전확인 ▶ 공급자적합성</p> <p>서비스기기, 편집기, 체본기, 오디오프로세서, 전화기, 음성 및 영상분배기, 공중전화 회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 단말기, 신용카드조회 단말기, 모뎀 내장한 특정용도의 단말기기</p>	<p>안전인증 ▶ 자율안전확인</p> <p>전자레인지, 전기가열기기, 자동판매기,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, 램프홀더</p> <p>자율안전확인 ▶ 공급자적합성</p> <p>전동형 롤스크린, 해충퇴치기, 팩시밀리기기,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, 원격제어방송기기, 에너지 저장장치, 노트북컴퓨터,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,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기기</p>	<p>안전인증 ▶ 자율안전확인</p> <p>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, 유체펌프, 식기세척기 및 식기 건조기, 전격살충기, 안정기 및 램프제어장치, 가습기</p> <p>자율안전확인 ▶ 공급자적합성</p> <p>천공기, 영상전송기, 보풀 제거기, 영상프로세서, 구강청결기, 게임기구, 고주파월더, 전기집진기, 전기에어커튼, 과일껍질깎기</p>

※ 제품사고 정보, 시장감시 결과를 고려하여 변동 가능성 있음

- 신제품이 적시에 안전관리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전기용품의 품목 체계를 재분류하고, 최소한의 안전기준 부과방식*을 도입하며,
 - * 모터 사용, 고전압 또는 대전력 사용 등 특정요건을 반영한 안전기준 부과
- 모든 어린이제품*에 대해 중금속(납,카드뮴,니켈), 가소제 등 안전기준을 공통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포괄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고자 함
 - * 어린이제품 :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제품

3 제품안전 3개 법률 정비

- 지난 3년간 제품안전관리 제도 운영에 있어 혼돈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, 온라인 쇼핑몰 급성장 등 제품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 관련 법률을 보완할 계획임
- 사업자가 제품관련 안전사고 발생 시에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, 통신판매 중개자가 인증 받지 않은 제품 판매 시 처벌근거를 신설하는 등 법률을 정비하고자 함

4 소통·협력 증진

- 지자체, 소비자단체 등과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, 부처별 상이한 안전관리수준에 대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생활제품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협업을 강화하고자 함

< 안전관리품목 협의사례 : 공산품 8개 품목 “환경부” 업무이관 추진 >

⇒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시행에 따라 품공법에 따라 국표원이 관리하던 8개 품목*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'15년부터 환경부로 이관

* 세정제, 방향제, 접착제, 광택제, 탈취제, 합성세제, 표백제, 섬유유연제 (총 8개)

- 제품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이는 방편으로 사업자에게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및 경영평가 기법을 개발하여 제공하고, 소비자에게 계절별 사고 다발품목에 대한 주의사항 등을 전파해 나갈 계획임